

논리 창의성 교육센터 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육이념과 목적 및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논리 창의성 교육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립목적) 본 센터는 대학의 논리와 창의성 및 기초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 과제의 개발과 인적훈련사업을 통한 문화교육과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논리-창의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운영
2. 논리-창의성을 지도하는 교사 교육 및 관련 직무 연수
3. 글읽기/글쓰기-논리 창의성 등 기초 교육 관련 교재 및 교구개발
4. 연구 및 학술용역사업 수행
5.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4조 (소재지)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

제5조 (조직) ① 본 센터에 센터(소)장을 두며,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센터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소장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간사, 조교, 연구원등을 둘 수 있다.

이 경우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은 별도의 지침 및 계약에 의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설치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센터 소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. 단 본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되며,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, 예결산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8조 (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9조 (재원) 본 센터의 재정은 교육수입, 용역수입, 연구지원비, 기부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 (행정 및 재정지원)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 자금, 행정 및 기술인력, 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 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2조 (예·결산서 제출) 소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·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3조 (기타 사항)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본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의 개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